

## 제 1 장 총칙

### 제 1 조 [총칙]

본 규정은 회사의 행동기준을 정한다.

### 제 2 조 [목적]

이 규정은 기업 윤리를 확립하며 회사의 신뢰를 얻음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장 고객존중의 경영

### 제 3 조 [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]

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의 품질, 최상의 서비스, 합리적인 가격의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한다.

### 제 4 조 [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]

- ① 고객의 제안과 요구는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하며 불만,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한다.
- ② 고객과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,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### 제 5 조 [고객의 권익보호]

- ① 고객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은 고객의 권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한다.
- ② 고객의 모든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며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③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.

## 제 3 장 준법과 사회적 책임

### 제 6 조 [법규 준수]

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률, 규칙,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하며,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

하지 않는다.

#### 제 7 조 [건전한 기업 활동]

- ① 공정한 경쟁은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② 모든 정보는 정당하게 입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.

#### 제 8 조 [사회적 책임]

-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 및 문화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.
- ②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사회에 기여한다.
- ③ 합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④ 사회적 제도 및 법규의 제정, 개정,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청원한다.
- ⑤ 각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소외계층 지원, 직원의 지역 사회 공헌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한다.

#### 제 9 조 [환경보호와 자원보존]

모든 사업은 환경 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,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,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.

#### 제 10 조 [안전관리 및 사고예방]

- ① 회사는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,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, 조치한다.
- ②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,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.

## 제 4 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

### 제 11 조 [평등하고 공정한 거래]

- ① 모든 협력회사는 구비된 자격을 기준으로 거래처 선정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.
- ③ 모든 거래는 사전 협의를 거쳐 상호간 평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도 하지 않는다.

### 제 12 조 [공동번영]

- ①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대우에스티**
- ② 평등, 공정,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여 상호 윤리규범의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.

### 제 13 조 [금품, 접대 등의 수수 금지]

- ① 현금, 상품권 등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, 향응도 수수하지 않는다.
- ② 출장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, 숙박비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는다.

### 제 14 조 [기타 불공정행위의 금지]

- ①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.
- ②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의 이중취업을 금지한다.
- ③ 협력업체 직원과의 금전대차,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## 제 5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
### 제 15 조 [명예와 품위 유지]

- ① 임직원은 각자의 품행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복장과 품위 있고 예의바른 행동을 한다.
- ② 임직원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상호 존중하며 불손한 품행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.

### 제 16 조 [공정하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]

- ① 임직원과 각 부문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인식하

고 부서 간 이기주의, 우월주의를 배제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회사의 성장, 발전을 추구한다.

- ② 임직원은 회사가 나아가는 목표를 인식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자율적 판단과 행동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③ 임직원이 금전대차, 연대보증 기타 사유로 정상적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신적, 물리적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④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한다.
- ⑤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하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법규와 규정, 제도를 준수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, 허위, 과장, 은폐, 누설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.

#### **제 17 조 [공정하고 조화로운 조직문화]**

- ① 임직원은 상호간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제안, 건의,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.
- ② 상급자는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하급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- ③ 임직원은 지연, 학연, 혈연, 성별, 신체장애 여부 등 업무와 관계없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대우 및 파벌조성을 하지 않는다.

#### **제 18 조 [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]**

- ①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하여 정리, 정돈, 청결을 생활화한다.
- ② 안전과 관련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.

#### **제 19 조 [직장 내 성희롱 금지]**

- ①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에게는 물론 회사의 이미지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해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기교육을 포함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실시한다.
- ②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의 유발 등,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.

#### **제 20 조 [임직원의 책임]**

-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.

- ②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지 않는다.
- ③ 회사에서 지급한 정품 소프트웨어 이외에는 어떠한 불법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지 않으며 근무중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.
- ④ 근무지에서는 도박 행위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⑤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, 임직원은 자율적인 자기계발 계획의 실천으로 스스로 자질과 능력을 높인다.

## 부 칙

제 1 조 [시행]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